

관사관리규칙

제정 2016. 3. 29. 규칙 제2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장에게 제공하는 주거용 관사의 이용·관리·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관사라 함은 원장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조에서의 타지라 함은 연구원의 소재지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관리부서) 관사의 운영·관리는 기획경영실에서 관장한다.

제4조 (사용기간) 관사 사용기간은 원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사용의 중단)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은 중단된다.

- ① 원장이 그 직위를 그만둘 때
- ② 원장이 그 사용을 그만둔 때

제6조 (규모) 관사는 전용면적 132㎡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제7조 (관사관리비) ① 관사의 관리비는 행정자치부 관련지침에 의거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비라 함은 공동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말한다.

제8조 (내부비품) 관사의 비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 부담으로 비치한다.

제9조 (타인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제공하는 관사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0조 (변상조치)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관사의 수리비는 연구원 부담으로 한다.

부 칙<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